

기간제근로자(청소원) 채용 계획 공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3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채용은 학력·전공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능력 중심의 채용이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구분	채용직종	성별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청소원	무관	1명	청사 내·외 청소 및 기타 환경미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채용 조건

신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직 근로자 등 관리지침」 등에 따름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업무성과, 근무평정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
보수	- 고정급(세전) : 기본급 월 1,910,8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6:00 ~ 15: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형태 및 근로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교대근무 등)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한사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사항 없음
- 생활근거지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기관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덕계동 467-2)

나. 우대사항(원서접수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에만 적용)

- 저소득층,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 지원자는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저소득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청소, 환경미화) 근무 경력자

※ 경력사항 제출 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시험방법 및 일정 · 장소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등이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는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또는 단체면접으로 검정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채용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구 분	일 시	장 소
채용공고	2023. 6. 1.(목) ~ 2023. 6. 9.(금)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23. 6. 5.(월) ~ 2023. 6. 9.(금) (09:00 ~ 18:00) ※ 6.6.(화) 현충일 방문접수 불가	·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접수(e-mail 및 택배 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인 9:00 ~ 18:00 내에서만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처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총무팀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031-828-9304, 031-828-933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23. 6. 13.(화)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면접시험	2023. 6. 15.(목) 14:00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 19.(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합격자 등록	2023. 6. 21.(수)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총무팀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

③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⑤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청소 업무 관련 해당자에 한함)

* 별도양식이 없는 경우 【붙임 8】 활용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⑪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②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1부(사진부착)

③ 탈모 상반신 사진: 반명함판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⑤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⑥ 공정채용확인서 1부

6. 참고사항

- 기간제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신원조사 또는 신원조회 결격사유,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총무팀(031-828-9304, 93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8. 경력증명서
9.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0. 공정채용확인서
11.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기관	성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청소원)

■ 제출 목록

구분	목 록	제출여부
필수서류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 1】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 【붙임 2】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 【붙임 3】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 제출 ☐ 미제출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붙임 5】	☐ 제출 ☐ 미제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6】	☐ 제출 ☐ 미제출
	⑦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7】	☐ 제출 ☐ 미제출
	⑧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표기)1부	☐ 제출 ☐ 미제출
	⑨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및 병역사항 모두 표기) 1부 (남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요건해당자	⑩ 관련분야 근무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⑪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⑫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⑬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⑭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3년도 제1회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청소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청소원)		(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		
○ 상기 본인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보유기간 경과시 폐기) * 거부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

※응시번호		응 시 표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청소원)	성명	
2023년 월 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으로 처리합니다.
3.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하단 응시표 성명 및 날짜도 기재)

【 이 력 서 】

1. 기본정보

성 명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청소원)
생월생일	년 월 일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사항 없음		
주 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추가항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보훈대상(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2.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3. 경력사항

근무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분야	기간제 근로자(청소원)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서명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자기소개서, 범죄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정보 등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행 2023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청소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

2023년 월 일

성 명 :

(서 명)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2023년 월 일

증명기관명 : _____

주 소 : _____

전화 번호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대표자 : _____ (인)

발 급 자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행 2023년도 제1회 기간제 (건물-청소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1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4.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